

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40일
신청인	법인 또는 기관명	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 (전화번호:)		
신청내용	취수해역	이름	수심 m
	1일 최대취수량	취수지점 정점 좌표 (톤/일)	
	개발목적		

「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전단·제4항·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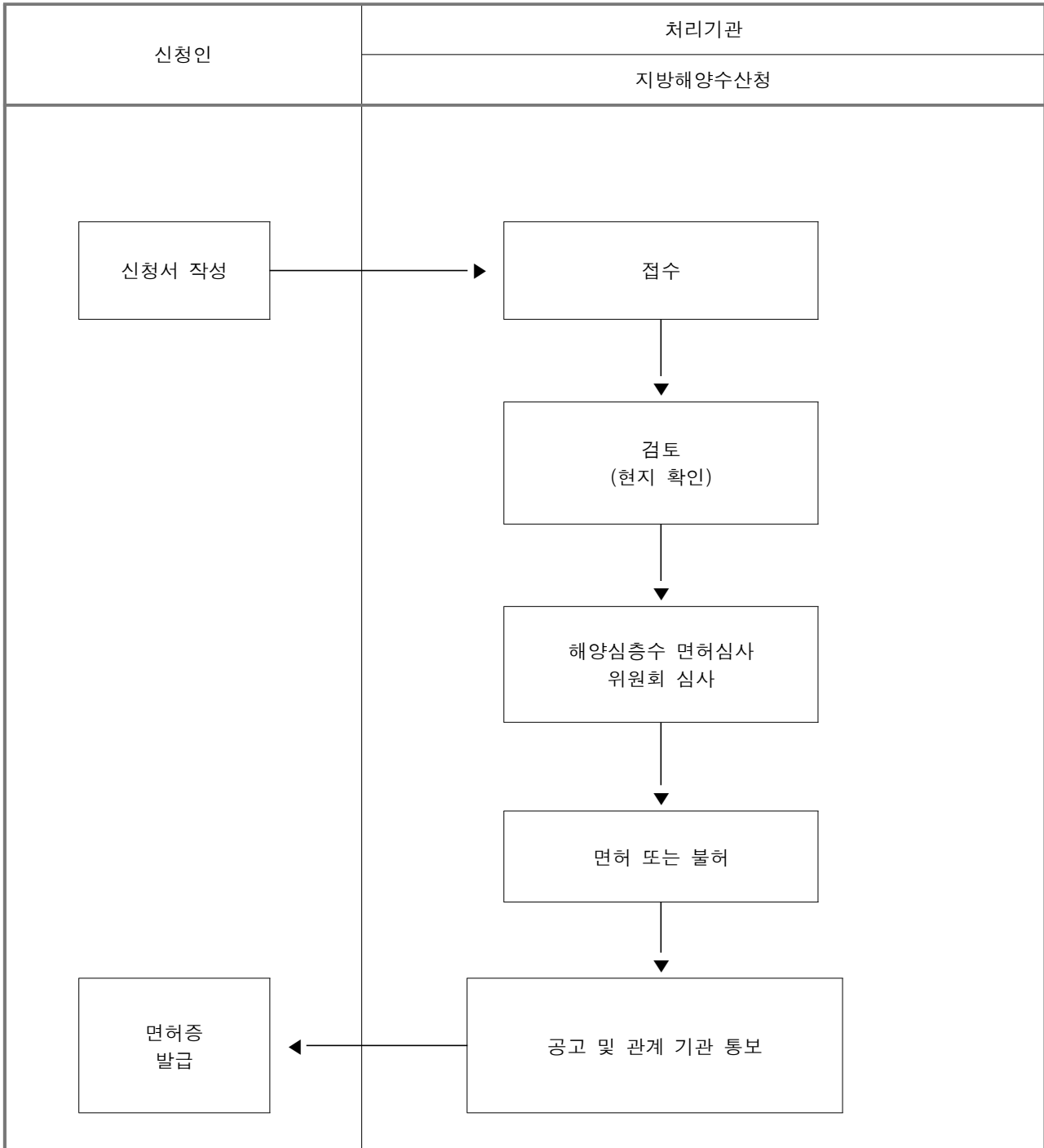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취수해역과 취수관의 위치(끝단의 좌표를 포함합니다)가 표시된 도면(수심과 등심선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의 도면에 표시해야 합니다) 2. 사업계획서 3. 1일 취수계획서(연평균 가동계획일수와 취수장치의 최대취수능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) 4. 시설의 구적도 및 개략설계도서 5. 자금계획서(지방자치단체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) 6. 해양환경피해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7. 원상복구계획서 8. 권리자에 대한 보상의 시기,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9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0.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처리기간산정

- 1. 서류 검토: 5일
- 2. 관계 기관 협의: 10일
- 3. 면허심사위원회 심사: 15일
- 4. 공고: 10일